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
----------	-----

2019.09.02.(월)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8월 22일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가. 제안이유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제69조

- 추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추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제2조제8항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29조로 변경(제25조)

## 2)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투자진흥기금 용도에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 지원 추가**(제14조)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중복지원**(입지, 고용보조금) 가능(제23조)
- 국내기업에게 **외국인 기업 인센티브 준용 지원**(제31조)
  - 입지지원(제20조), 교육훈련보조금(제21), 고용보조금(제22조)
  - 투자환경개선시설지원(제25조)
-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외기업 투자지원**으로 확대(제5장)
- 타시도, 도내 투자기업 지원비율 확대(제28조)
  - 보조금 : 투자금액 5% → 10% / 본사이전 지원 2억 → 10억
- 서비스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제29조의2)
  - 보조금 : 투자금액의 2% → 10%, 최고 10억 → 20억원
- 양질의 일자리 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제31조의2)
  - 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인당 월 200만원, 1년, 5억원 범위내 지원
- 국내외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제31조의3)
  - 아파트형 공장, 건물 임차료의 50%를 2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제33조)
  - 1일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3,000억 이상 투자기업 추가지원
    - ▶ 도내 산업단지 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
  -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 확대(별표3)
  -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 2% 추가 지원

-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강화(제36조)
  - 투자 정산 후 3년간 해당사업장에서 투자사업 영위
  - 사업 이행기간 동안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중요재산 반출, 변동,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관한 사항
    - ▶ 기업구분 변경, 사업장 구성 변경, 이전, 투자기간 연장 등
-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사유 강화(제37조)
  - 투자계획 미달성, 사업 이행기간 종료전까지 기존사업장 매각
-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유출·누출 금지(제38조)

###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즉,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의 추가 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중복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과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256호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2조제19호다목 중 “50%”를 “25%”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외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제23조 중 “지원하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2조제5항”을 “영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로 한다.

제25조 앞에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퍼센트” 를 “10퍼센트” 로, “2억원” 을 “10억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5퍼센트” 를 각각 “10퍼센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를 “의거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5.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제29조의2제2항 중 “2퍼센트” 를 “10퍼센트” 로, “10억원” 을 “20억원” 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하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하며,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기업, 타시도 기업

및 도내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제31조의 고용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1조의3(임차료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나 창업기업 중 도와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대료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1항 중 “내지 제30조”를 “부터 제31조의3까지”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를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③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



용 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로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장·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⑥ 시장·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정산완료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를 “사업이행기간 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제2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 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1%
20명 이상 30명 미만	1.5%
30명 이상 40명 미만	2%
40명 이상 50명 미만	2.5%
50명 이상 60명 미만	3%
60명 이상 70명 미만	3.5%
70명 이상 80명 미만	4%
80명 이상	5%

\* 타시도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투자: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증설투자: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3. (생략)</p> <p>14.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u>국민건강보험법</u>」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lt;신 설&gt;</p> <p>15. ~ 18. (생략)</p> <p>19. (생략)</p> <p>가. ~ 나. (생략)</p> <p>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u>50%</u>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p> <p>20.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국민건강보험법</u>」제69조의 ----- ----- -----</p> <p>라.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u>」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15. ~ 18. (현행과 같음)</p> <p>19.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 -----25% ----- -----</p> <p>2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 2. (생략) &lt;신설&gt; 3. ~ 4. (생략) ② (생략)</p>	<p>제1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국내외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u>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u>현금을 지원</u>하는 경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 ----- <u>지원</u> 할 수 있다.</p>
<p>제5장 <u>국내기업</u> 투자지원</p>	<p>제5장 <u>국내외기업</u> -----</p>
<p>제25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p>	<p>제25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 ----- 영 제2조제8항----- ----- ----- ② -----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 -----.</p>

현행	개정안
<p>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p> <p>① (생략)</p> <p>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u>5퍼센트</u> 범위안에서 최고 <u>2억원</u>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u>5퍼센트</u>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u>5퍼센트</u>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10퍼센트</u> ----- <u>10억원</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④ ----- ----- ----- ----- ----- ----- ----- ----- ----- -----.</p> <p>⑤ <u>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9조(도내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9조(도내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p> <p>----- 의거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p> <p>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p> <p>5.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p>
<p>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p> <p>① (생략)</p> <p>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10퍼센트 -----</p> <p>----- 20억원까지 -----.</p> <p>③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31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도내에 투</p>

현행	개정안
	<p>자하는 수도권 기업, 타시도 기업, 및 도내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는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31조의2(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p> <p>① 도지사는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제31조의 고용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lt;신설&gt;</p>	<p>제31조의3(임차료 지원) ①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나 창업기업중 도와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대</p>



현행	개정안
	<p>료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p>	<p>제32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부터 제31조의3까지 ----- ----- ----- 20억원 ----- -----.</p> <p>② ----- 제31조의 3 ----- ----- ----- -----.</p>
<p>제3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li> <li>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li> </ol> <p>③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을 별표3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④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 위원회의 -----.</p>
<p>제33 ~ 제34조</p> <p>(생략)</p>	<p>제34 ~ 제35조</p> <p>( 현행과 같음 )</p>
<p>&lt;신설&gt;</p>	<p>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p> <p>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p> <p>③ 시장·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p>

현행	개정안
	<p>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p> <p>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2. <u>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3. <u>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u></li> <li>4. <u>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u></li> <li>5. <u>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6. <u>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u></li> <li>7. <u>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u></li> </ol> <p>⑥ 시장·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⑦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p>

현행	개정안
	<p><u>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u></p>
<p><u>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u></p> <p>① (생략)</p> <p>1. (생략)</p> <p>2. 투자기업이 <u>정산완료</u>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u>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u></p> <p>3. ~ 7.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생략)</p> <p>&lt;신설&gt;</p>	<p><u>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u></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업이행기간 내에</u> -----</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u></p> <p>9. <u>제28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u>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제37조 ~ 제38조</u></p> <p>(생략)</p>	<p><u>제39조 ~ 제40조</u></p> <p>(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7.5.>

1. 농경지를 도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확대

## 2. 비용 발생 요인

-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지원한도 50억, 변동없음
  - 지원비율 확대(5%→10%), 지원금액 확대(서비스기업, 본사이전)
- 보조금 지원 항목 추가 \*지원한도 50억, 변동없음
  - 건물임차료, 현금지원(외국인투자기업), 연구원 고용보조금

## 3. 관련조문

- 제14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 평균치 기준
- 나. 추계 결과: 지원비율 확대(5%→10%) 반영, 100% 인상
-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214,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60,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54,0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평균 지원액(2014~2018): 도내 투자기업(60억), 수도권 이전기업(154억)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일반지역(65:35), 수도권 인접지역(45:55), 지원우대지역(75:25)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장 이종구